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현 (외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외국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·이동신고하려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본증명서는 재외국민등록 신청 또는 등록된 사항의 변경·이동신고를 받은 공관의 장이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5. 28. ~ 7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행정정보 공동이용”을 “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그 사본을”을 “해당 서류(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

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행정정보 공동이용”을 “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그 사본을”을 “해당 서류(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3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

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등록공관의 장은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
1·2. (생략)

<신설>

3·4. (생략)

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-----

----- 해당 서류(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 -----.

1·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3조제4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

4·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	
연 락 처	(032) 585 - 3188